

濟州島研究 제15집, pp.257~267

<서 평>

濟州史料耽讀會 共著, 『19세기 濟州社會 研究』,  
1997, 一志社

김 일 우\*

## I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문화학술단체가 문화관광 자원의 확충과 지역 주민 정체성 추구 등을 위해 문화와 역사 연구를 지원하는 분위기가 각 지방에 형성된 감이 든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전국의 지방사 연구는 과거보다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濟州의 지방사 연구에서도 이 같은 경향을 역시 느낄 수 있고, 그 성과도 꽤 나오고 있는 편이다. 대우재단의 지원을 받은 濟州史料耽讀會의 연구자들이 일전에 『19세기 濟州社會 研究』를 共著로 출간하게 된 것도 이러한 성과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본서를 펴낸 제주사료탐독회는 오랫동안 제주 지방사 연구에 주력해 온 10명의 연구자들이 1992년에 『濟州啓錄』의 講讀을 위해 결성한 것이다. 이회는 조선시대 제주의 역사를 밝히기 위해서는 풍부하게 남아 있는 관찬 사료의 체계적 검토가 우선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고, 그 첫 번째 검토 대상으로 『제주계록』을 택했다.

『濟州啓錄』은 조선시대 憲宗 12년(1846) 2월 4일부터 高宗 21년(1884) 11월 6일까지— 이 사이 哲宗 10년(1859)부터 高宗 2년(1865)까지 7년간, 동왕

\* 탐라대, 제주한라대 강사

10년(1873)부터 동왕 17년(1880)까지 8년간, 합하여 15년간의 사실 누락—濟州牧(旌義·大靜縣 포함)에서 조정에 보고했던 啓文을 備邊司(1864년 이후는 議政府)에서 베껴 기록한 책이다. 이 책에는, 일반적으로 狀啓가 왕명을 받아 지방에 파견된 수령 등이 그 지역의 중요한 일을 왕에게 보고하거나 청원하는 문서이듯이, 19세기 제주 사정을 생생히 전해 주는 사실이 어떠한 관찬 사료보다 많이 실려 있다. 제주사료탐독회가 여러 관찬 사료 중 『제주계록』을 첫 번째 검토 대상으로 삼은 이유도 여기에 있음을 본서의 서론에 스스로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제주계록』에 대한 이 회의 강독은 1992년 3월부터 격주로 2년 9개월 여간에 걸쳐 마치고, 이후에는 내용 검토에 대한 중간발표와 학술심포지움(1995년 6월), 1995년 12월에는 일부의 번역본(『濟州啓錄』 번역본 2권 중 1권) 출간 등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각 연구자가 개별 연구도 병행하였다. 이 개별 연구가 결실을 맺어 출판된 것이 본서이다. 즉, 본서는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 작업을 통해 『제주계록』에 대한 이해를 얻고, 그것을 근거로 각 연구자가 다룰 주제를 택해 이루어진 개별 연구 성과를 묶어서 출판한 것이다.

종래에도 제주 관련 역사 자료집의 발간, 또는 그에 대한 개인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본서처럼, 다수의 연구자가 한 자료집을 공동 검토하여 이해하고, 그 바탕 위에 해당 시기 제주사회의 종합적 이해를 위한 다양한 주제의 각 연구물을 내어 출판한 적이 없다. 때문에 본서가 제주 지방사 연구에 미칠 영향은 자못 크다. 그리고 본서는 제주 관련 역사 자료집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 제시에 큰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서는 제주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지방사 연구자도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든다.

본서의 출간은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高麗時代史 연구는 행한 적이 있지만, 朝鮮後期史에 대해서는 전문적 연구를 해 본 경험이 없어 소양이 부족한 편이다. 이러한 필자가 19세기 제주사회의 역사를 다룬 본서에 대해 서평 형식의 글을 쓴다는 것은 만용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은 제주학회 편집위원회의 의뢰에 응한 필자—이에 대해 지금은 후회막심이지만—의 책임을 면함과

동시에, 조선후기가 아닌 타 시대 전공자가 본서를 읽으면서 갖게 된 소감도 전혀 의미가 없지는 않다는 주위의 권유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선후기 전공자가 아닌 필자의 본서 이해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더 나아가 빛나갈 우려도 있다. 이 점 미리 共著者と 독자의 양해를 구해 두고자 한다.

## II

본서에는 각각의 독립 연구 논문 총 9편이 실려 있다. 이 중 비슷한 주제의 2 편을 한 연구자가 다루었다. 때문에 본서의 共著者는 제주사료탐독회에 속한 8 명이다. 『濟州啓錄』 講讀 등의 공동 작업을 행한 이들이 여기에 나오는 다양한 내용 중 각자가 다룰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 여기의 자료, 또는 다른 사서의 자료를 보태어 이루어진 연구가 본서에 실린 것이다. 그런데 이들 연구자가 공동 작업을 통해 『제주계록』에 대한 이해를 구했지만, 본서가 이들 연구자의 공동 연구 단계까지 이른 결과물이 아니라는 점은 각 연구의 내용과 그 시각 및 서술 체계의 형태 등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이에 필자는 전체를 몽뚱그려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각 연구의 내용을 본서에 실린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한다.

우선 본서의 큰 목차가 되고 있는 각 연구 제목과 그 연구자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9세기 濟州 지역의 身分構造와 職役의 사회적 의미—— 金東桢
- 朝鮮後期 濟州地方의 軍事制度—— 金祥玉
- 朝鮮後期 濟州 還穀制의 運營實狀—— 姜昌龍
- 19세기 濟州 지역 進上의 실태—— 朴贊殖
- 19세기의 제주 邑城—— 吳洙政
- 19세기 제주도의 國家祭祀—— 조성윤
- 19세기 濟州人의 漂流實態—— 高昌錫
- 19세기 외국인의 濟州漂到—— 高昌錫
- 『濟州啓錄』의 吏讀文과 吏讀—— 吳昌命

김동전 연구자(「19세기 濟州 지역의 身分構造와 職役의 사회적 의미」, 호칭은 연구자로 통일함)는 『제주계록』에 산견되는 職役들이 어떠한 사회적 의미를 가졌는가를 해명하려는 의도에서 이 연구를 시도하였으나, 여러 이유 때문에 그것을 다음 기회로 미루고, 여기에서는 그 문체 제기 수준에 머물고 말았다는 사실 등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그는 19세기 제주 지역의 신분구조 변동양상에 대한 종전 자신의 연구 결과를 여기의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정리해 놓았다.

19세기 제주 지역의 신분구조 변동양상에 대한 그의 연구는 19세기 전반부터 후반에 걸쳐 작성된 大靜縣 4개 마을 戶籍 中草 분석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에서 그는 1930년대부터 시작하여 1980년대 후반까지 다른 한국사 연구자들이 종종 해 왔던 것처럼, 호적 자료 기재의 職役에 의한 신분별 통계의 시기적 변화를 통해 19세기 제주사회에 있어서 신분제의 동요·해체 정도를 파악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그의 연구에 의해, 제주사회도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戶籍 기재 職役의 신분별 시기적 분포 비율이 常民戶의 감소와 그에 따른 中人戶·兩班戶의 증가로 특징지을 수 있듯이, 大邱·蔚山·彦陽 등의 지역에 비해 빠르거나, 혹은 더디기도 하였지만, 신분제의 해체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또한 이 연구자는 『濟州啓錄』에 나타나는 각 職役 해당자가 영위하였을 실생활의 실태를 언급하고, 법제적 의미를 지닌 戶籍 기재의 職役은 사회·경제적 의미를 지닌 신분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런데 조선후기에 이르러 身分職役制가 당시 발생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해체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戶籍 기재 職役에 기준을 두어 구분한 신분별 통계의 시기적 변화에만 근거하여 조선후기 신분제의 해체·동요를 설명한다는 사실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는 연구가 상당수 나온 상태이다. 이러한 연구는 1980년대 말부터 제기되었고, 1990년대 초부터는 대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 그리하여 신분제의 개념과 그 내용, 조선후기 지배체제와 그 운영원리의 변화, 이에 수반한 戶籍 대장의 기능 변화와 그 기록의 부실화, 戶籍 기재의 각 職役과 身分의 관계, 각 職役 소지자의 실제적 경제활동, 각 職役 해당 인물의 家系 추적을 통한 신분 이동 여부의 규명

등과 같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는 역사적 실재에 근거하여 조선후기 신분제의 해체, 혹은 그 지속성 등을 설명하는데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戶籍 기재의 職役에 의한 신분별 통계의 시기적 변화를 고찰만을 주목하였던 종전 연구 방법론의 맹점을 드러나게 하였다고 생각된다. 위의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현재의 연구 경향이 반영, 혹은 언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운 느낌을 갖게 한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19세기 大靜縣 戶籍 中草 기재 通德郎·將仕郎 등의 職役을 代加制에 의해 취득한 官品이라 여겨 그 戶主의 신분을 兩班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추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김상욱 연구자(「朝鮮後期 濟州地方의 軍事制度」)는 조선시대 군제 정비에 따라 제주 지방의 군사제도가 확립되었던 것으로 이해하는 한편, 조선후기 제주 지방의 軍事制度가 어떠한가를 밝히기 위해 제주 지방군의 병종과 그 조직·軍官의 분류·지휘계통과 방어시설 등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濟州啓錄』뿐만 아니라 조선왕조실록의 제주 관련 기록과 조선후기 편찬 제주 관련 각종 자료집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연구 내용의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 이 연구로서 조선후기 제주 지방에 있었던 군관의 명칭과 그 지휘계통, 병종과 그 규모, 방어시설의 유형 등에 대한 이해가 한층 더 높아지게 되었다. 한편 이 연구는 제주의 東伍軍이 다른 지방과는 달리 賤隸化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東伍軍에 대한 새로운 문제 제기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편 이 연구는 연구자도 인정하듯이, 조선후기 제주 지방의 군사 제도를 외형적 측면에 치중하여 고찰한 것이지, 그 내부 운영의 모습은 다루지 않은 편이다.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조선후기 제주 지방군제의 실상이 입체적으로 이해되리라 여겨진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從 9 품의 武官으로 추측하고 있는 助防將은 口傳軍官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강창룡 연구자(「朝鮮後期 濟州 還穀制의 運營實狀— 賑恤의 機能과 關聯하여—」)는 賑恤政策으로서의 賑穀과 還穀의 차이, 환곡의 기능과 그 변화, 환곡의 운영 실태 등을 이에 관한 소양이 부족한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그는 『제주계록』에 실려 있는 환곡에

관한 기록을 제시하고, 그 기록 중심으로 19세기 제주 환곡제의 운영 실상과 그 폐단을 논의하였다. 이로써 19세기 제주 환곡제 운영 절차와 그 용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었다고 보인다.

여기에서 연구자는, 1840년 이후 환곡은 賑恤의 기능을 상실한 채 賦稅의 기능만 남았다는 점을 기존 연구가 밝힌 것으로 인용한 다음에, 제주의 환곡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1869년까지도 진홀적 기능을 지녔던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1840년 이후 제주 외 다른 지역의 환곡도 약화되었다손 치더라도 진홀적 기능을 여전히 지녔던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이 연구자가 인용한 기존의 연구도 1840년 이후의 환곡이 진홀적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던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 듯 하다. 한편 그는 19세기 중반에 제주 삼읍은 田政의 토지세와 軍政의 호포가 없었던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의아심을 안 가질 수 없다.

박찬식 연구자(「19세기 濟州 지역 進上의 실태」)는 조선후기에 이르러 大同法이 실시되었다손 치더라도 현물의 進上物 부담이 여전히 컸던 대표적 지역이 제주이었음을 주목하고, 朝鮮前期부터 후기에 걸쳐 제주 지역의 진상 시기·품목·수량 등을 『濟州啓錄』 등 여러 자료에서 뽑아 내 상세히 소개, 혹은 도표화하였다. 이 연구는 조선시대 제주 지역의 진상 실태 이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연구자는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진상에 대한 제주민의 피역 빈발이 진상 품목을 충당키 위한 補民庫·平役庫의 운영을 가져왔고, 이후 이것의 운영 부실로 지방재정이 부족해지자 관은 그 부족분을 火田·牧場田에 대한 가혹한 수탈로 매우었던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가혹한 수탈 때문에 화전민들이 1862년의 임술 제주민란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던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여기에서 내비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결과의 연계고리가 아직은 유기적으로 해명되어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 듯 싶다.

오수정 연구자(「19세기의 제주 邑城—『濟州啓錄』의 修·改築 사례를 중심으로—」)는 濟州 州城·旌義縣城·大靜縣城 등 제주 3 읍성의 설치배경 유래와 규모 및 그 변화에 관한 것을 여러 자료에서 뽑아 상세히 고찰하고, 이어 『濟州啓錄』에 나타난 21개 사례를 중심으로 제주 3 읍성의 성곽과 관아 수·개축 실태를 논의하였다. 이로써 제주 3 읍성의 성곽은 이 지역의 자연환

경— 타 지역에 비해 연약한 土質, 多雨, 强風과 多風, 多濕 등—으로 인해 타 지역 보다 더 많은 보수가 필요했으며, 이때는 군사적 요인을 중시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곽의 문루와 문판에 대한 보수의 비중이 높았다는 사실 등이 밝혀졌다.

그런데 19세기 제주 읍성의 수·개축이 인력 동원의 어려움과 재정 부족이라는 당시 상황 때문에 원활하게 자주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논의도 나오고 있다. 이 점은 꼭 19세기뿐만 아니라 전근대사회의 통시대적 상황이었을 듯 싶다. 그렇다면, 『제주계록』에 드러난 수·개축의 건물을 통해 당시 제주 관아가 펼쳤던 활동의 우선 순위 동향을 엿보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조성윤 연구자(「19세기 제주도의 國家祭祀」)는 유교가 국교였던 조선시대의 국가는 그에 바탕을 둔 祭祀의 주기적 반복을 통해 민에 대한 지배를 계속 확인해 나아감과 동시에, 지배구조에 대한 신성함을 부여함으로써 타종교에 대한 유교의 상대적 우위를 민에게 각인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을 가진 연구자가 제주에서 거행되었던 조선시대의 국가제사를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우선 연구자는 제주 3 읍의 祭壇 유형과 위치를 시기별로 상세히 정리하고, 제주 3 읍에도 공통적으로 社稷壇·城隍祠·厲壇·文廟 등이 마련되어 社稷大祭·城隍發告祭·厲祭·釋尊祭 등의 국가제사가 전국의 여느 군현과 마찬가지로 행해졌음을 밝혔다. 이 외에도 국가제사를 체계적으로 정비한 李衡祥 목사가 폐지하기 이전까지(1702년)는 민간 신앙의 대상이었던 제주목의 廣壤堂과 遮歸堂이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祠廟이었던 사실에 대한 의미를 고찰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차원에서만 행해졌던 風雲雷雨祭가 제주에서도 조선후기까지 폐지되지 않은 채 특별히 실시되었던 것은 이에 대한 제주민의 지대한 관심과 조선초기까지 계속 유지되었던 탐라국의 유제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조선시대 제주에서 거행되었던 국가제사가 전국의 여느 군현과 같은 공통점뿐만 아니라 상당히 다른 면도 지녔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濟州啓錄』에 나타나고 있는 社稷大祭·城隍發告祭·厲祭·釋尊祭·羸祭·風雲雷雨祭·漢拏山祭 등 7개의 정기적 국가제사를 다 거행하였던 지역은

濟州牧倅이고, 나머지 旌義·大靜縣에서는 앞의 4개만 치렀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城隍發告祭·厲祭와 같이 일반 대중에게는 매우 중요하지만, 유교인들의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은 민간 신앙도 국가제사로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서는 민중이 바라는 바를 관에서 주도하면서 유교식으로 개편하고, 이것을 민중으로 하여금 받아들일도록 하는 효과를 구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李衡祥 목사가 폐지한 풍운뇌우제의 복설 및 漢拏山神祭의 祠典 재등록과 제사 거행의 李 목사 건의를 국가가 수용한 것 등의 상황 이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보듯이, 제주의 국가제사가 제주민의 삶을 지배하는 민간 신앙을 포괄하였던 것은, 이것이 민에 대한 지배의 계속적 확인과 지배구조에 대한 신성함 부여, 타종교에 대한 유교의 상대적 우위 각인 등과 같은 조선시대 국가제사가 지향한 바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부합하였기 때문이라고 연구자는 이해하였다. 이때 국가제사에 포괄되었던 대표적 예의 민간 신앙이 城隍神이었는데, 大靜縣에서는 전통적으로 뱀신을 모시는 遮歸堂이 국가에 의하여 城隍祠로 지정되었던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에서는 지방관이 나서서 뱀신에게 제사지내는 것을 통해 국가가 제주민에 대한 헤게모니를 점진적으로 확립해 나아갔던 것이라 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제주의 국가제사에 다수의 地方土族이 獻官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이들이 지방관과 합세하여 유교 지배체제를 확립하고, 그 바탕 위에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려는 시도였으나, 도민들의 반발로 용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리고 무교와 불교식이었던 전통적 제주 제사방식과 대립상을 보여주는 등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던 제주의 국가제사가 체계적 정비를 거쳐 유교식으로 서서히 정착하게 된 시기는 조선후기부터였고, 이것은 유교가 다른 종교 이데올로기에 대한 지배를 실현해 나간 과정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이해하였다.

앞으로 많은 검토를 필요로 한다고 연구자 본인 스스로가 언급한 이 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덧붙일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에서는 민간 신앙의 대상이었던 제주읍의 廣壤堂과 遮歸堂이 국가 공식 '祠廟(壇廟)' 항목에 올라 있었다는 사실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으로 보고, 그 의미를 제주가 지닌 특수성(즉, 한반도 연안으로부터 바다로 멀리 떨어진 지리적 격절성, 耽羅國의 존재와 土官制 실시 지역이라는 역사적 경험의 특이성)과 관련하여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성황당과 같은 민간 신앙 대상의 堂 또는 祠가 국가 공식 '祠廟'에 올라 있는 경우는 제주뿐만 아니라 한반도 육지부의 다른 군현에서도 많이 발견된다. 따라서 제주읍의 廣壤堂과 遮歸堂이 국가 공식 '祠廟' 항목에 오른 것은, 제주가 지닌 지리적·역사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군현 지역에서도 이러한 경우를 쉽게 찾을 수 있듯이, 당시에 보편적으로 행해졌던 사실에서 그 의미를 모색하여야 되지 않을까 한다.

고창석 연구자(「19세기 濟州人의 漂流實態」)는 전근대사회 제주민의 일상 생활에 드물지 않게 다가와 치명적 영향을 끼쳤던 표류에 관한 것을 『濟州啓錄』의 기사에 근거하여 다루었다. 여기에는 19세기 후반 제주민이 제주에서 출발하고 난 뒤에 대풍 등을 만나 표류하여 異國(일본·중국·琉球)으로 갔다가 귀환하기까지의 여러 과정이 기록된 『제주계록』의 35년간 42 사례(실질적으로는 49 건, 일본: 25 건, 중국: 19 건, 유구: 5 건 등의 총 130 여명)를 중심으로 살펴본 표류경위와 귀환경로 등이 도표화를 통해 상세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에 의해 19세기 후반 3 지역의 이국으로 표류하였던 제주민이 각각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떠한 조치를 받으며 얼마만에 귀환하였고, 귀환 후 이들에 대한 제주 관아의 조치는 어떠했는가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또한 제주민은 일상생활의 出漁(표류 기록 중 가장 많은 19 건수), 죄인이나 물건(上納의 말, 진상의 굴 등)을 감독하여 호송하는 押송을 겸하여 행하기도 한 육지부나 島内の 장사, 새로이 만든 배의 인수 입항, 牛島入耕, 屋材 운반 등등의 목적으로 농사철을 피한 주로 8, 9월에 帆船이나 테우를 타 바다로 나갔다가 대풍 등을 만나 이국으로 표류하였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제주민이 육지에 내다 판 물품은 미역·涼太·草席·고기·전복·海藻·옹기 등이며, 그 대가로 육지에서 사왔던 물품은 쌀과 쌀보리의 미곡류·무명·乾魚·藥材 등이었음과 동시에, 이들의 거래 지역은 京城과 江華를 비롯한 충청·경상·전라의 일부 지역이었던 사실 등이 다루어졌다.

한편 연구자는 제주 표류인들의 귀환이 자력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없고,

관부를 통해서만 가능했다고 언급하였다. 이것은 『제주계록』에 실려 있는 것 외의 제주 표류민 귀환은 전혀 없다는 전제에서 비롯한 이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濟州啓錄』에는 올라 있지 않지만, 자력 또는 해상 무역에 종사하는 국내의 민간인 도움 등으로 귀환한 제주 표류인들도 상당수 있지 않았을까 한다.

19세기 후반 제주민의 이국 표류와 귀환을 다룬 이 연구는 당시 제주민의 일상적 삶이 어떠하였는가를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앞으로의 제주 지방사 연구가 보다 주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위의 연구를 행한 고창석 연구자(「19세기 외국인의 濟州漂到」)가 이번에는 『濟州啓錄』의 내용 중 외국선박 제주 漂到에 대한 것을 추적하여 다루었다. 여기에는 『제주계록』에 나와 있는 외국선박 제주 漂到의 14 개 사례(일본 선박: 8 건에 10 척 130 명, 중국 淸 船舶: 6 건에 6 척 淸人 11명과 佛·俄人 49 명 포함 160 명)가 자세히 정리되었다. 또한 외국선박 출몰의 상부 보고 일자, 제주내 외국선박 출몰의 보고절차와 그 대책, 그 선박의 漂到 顛末 및 船制와 人形 등에 관해 수령이 問情하여 작성하는 問情記 등등이 도 표화되어 있듯이, 19세기 외국선박의 제주 표도에 관한 전반적 상황이 자세히 언급되고 있다.

이 연구에 의해 19세기 제주 표도의 외국선박은 대부분 상업을 목적으로 출항하였다가 대풍의 피해를 본 중국과 일본의 배였음이 드러났다.

오창명 연구자(「『濟州啓錄』의 吏讀文과 吏讀」)는 『제주계록』에 나오는 吏讀文의 특징과 吏讀 항목을 살펴보고, 吏讀의 형태 분석을 통해 그것의 문법 기능과 의미를 밝혀, 본 책의 해독과 이해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여기에는 『제주계록』에 나오는 吏讀 항목을 총망라하여 추출하고, 실제 쓰여진 예문을 들어 그것의 뜻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吏讀에 대한 소양이 전무한 필자도 쉽게 이해하여 많은 계발과 느낌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연구를 정독하고 난 뒤에 필자는 吏讀에 대한 생소함을 많이 줄였다. 더 나아가 吏讀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따로 마련하여 갖는 것이 역사 연구자에게는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吏讀에 대한 이해를 아직 못 갖춘 필자가 『濟州啓錄』이나 이와 유사한 자료를 참고해야 할 때는

이 연구를 곁에 두어야 할 것 같다.

끝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교정의 부실이다. 본서에 실린 각 연구 중 몇 편은 교정이 만족스럽게 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로 인해 당황한 필자가 확인하기 위해 시간을 소모한 기억이 난다. 또한 본서의 연구자가 참여한 『濟州啓錄』의 번역본도 전체를 세밀히 살펴볼 여유는 갖지 못하였지만, 원문의 인명 誤記와 誤譯 및 적절치 않게 설명된 註 같은 예(『제주계록』 번역본 42 쪽 崔廷世는, 崔廷好가 맞음, 39·47 쪽 천신용 진상은, 천신과, 진상이 맞음, 49 쪽 각주 86의 束伍에 대한 설명 등) 등이 눈에 들어온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유의하여야 할 점으로 보인다.

### III

지금까지 본서의 각 연구 논문을 읽으면서 느꼈던 필자의 소감을 적어 보았다. 워낙 다룬 주제가 광범위하고, 朝鮮後期史에 대한 필자의 소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서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견해를 가지고 비평 비슷한 언급이나 일삼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앞선다. 이 점 共著者와 독자의 양해를 거듭 구한다.

여하간에 본서의 출간이 앞으로의 제주 역사 관련 자료집 발간과 그것의 연구 방향 등에 큰 영향을 끼치리라는 점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본서의 연구 방법과 내용은 지역사로서의 제주 역사 연구만이 아니고, 한국사 속에서 제주 역사의 이해, 더 나아가 제주 역사 연구를 통한 한국사의 새로운 체계화를 지향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서는 바람직한 제주 지방사 연구를 향해 거보를 내딛는 선구적 업적이기도 하다. 앞으로의 제주 지방사 연구도 본서의 업적을 계승하며, 그것을 계발·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필자는 본서의 출간이 제주 지방사 연구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이 같은 연구 성과를 거둔 연구자들에게 감사와 축하를 드린다.